

[별지 제45호 서식]

##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인<br>적<br>사<br>항 | 계약자  | 주민등록번호 |
|                  | 사업체명 | 공제계약번호 |
|                  | 주소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휴대번호 | E-mail |

|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대출액 | 금 원 | 미납이자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\*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납이자가 없어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대출<br>신청<br>및<br>약<br>정 | 대출종류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대출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대출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대출 |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생대출 |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산대출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·약정금액 |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(₩)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출이자율   |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일반대출은 매 분기별 기준이율과 연동하여 이율변동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출기간    | 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까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출계좌    | (은행)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자수납일   | 매월 ( ) 일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\* 대출의 총한도는 납부부금 합계액과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%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 
\* 일반대출의 한도는 대출 총한도와 동일하며, 대출 총한도내에서 의료대출은 최대 1천만원, 재해대출은 “재해확인서”상의 피해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, 회생·파산대출은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신청가능합니다.  
\* 기존 일반대출을 의료·재해·회생·파산대출로 대환하거나 대환후 한도범위내 추가 신청, 또는 일반대출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  
\* 대출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하며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  
\* 의료·재해·회생·파산대출은 잔액기준내 최대한도내에서 추가 증빙서류 제출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  
\* 일반대출은 인터넷(www.8899.or.kr), 콜센터(1666-9988), 모바일 앱, 방문(본부 및 지역본부)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  
\* 의료·재해·회생·파산대출은 방문(본부 및 지역본부) 및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하며,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원본)의 수취후 검토·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진행됩니다.

|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
| 대출총합계 | 금 원 (₩) |
|-------|---------|

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약<br>정<br>서 | 제1조(대출신청자격)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미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.  |
|             | 제2조(대출기간) 대출기간(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)은 일반대출은 1년, 의료대출은 1년, 재해·회생·파산대출은 2년으로 하며, 기간내에 대출금이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됩니다. |
|             | 제3조(상환방법) 대출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,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  |
|             | 제4조(대출이자) ①일반대출의 대출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일자(이하 “이자납부일”이라 한다)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, 대출일이 해당한 월의 다음 월부터 최초 납입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②이자납부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③미납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납부일마다 재청구합니다.  |
|             | ④대출시행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합니다.  |
|             | ⑤대출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출이율은 노란우산 홈페이지(www.8899.or.kr) - 공제소개-기준이율공시-대출이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⑥의료·재해·회생·파산대출의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, 최초 대출기간내 미상환시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   |

##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업무처리요령

|     |  |
|-----|--|
| 약정서 | 제5조(기한의 이익 상실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 미납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 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<br>1.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<br>2.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<br>3.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<br>4.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<br>5. 계약이 무효가 된 때<br>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중앙회는 계약해지후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 |
|     | 제6조(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우선변제) 공제금,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.   |
|     | 제7조(부대비용) 대출에 따르는 제비용,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및 재판외의 제비용, 손해금은 중앙회가 정하는 요율·시기·계산방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여 변제합니다.  |
|     | 제8조(이행장소) 채무의 변제장소는 중앙회 또는 그 지역본부·센터로 합니다.   |
|     | 제9조(주소변경통지) 본인은 약관 제27조에 따라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하고, 변경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  |

### 공제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약관

- 본인(계약자)이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가 정하는 납기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,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)에 출금 대체하여 주십시오.
- 자동납부지정계좌의 잔액이 납기일 현재 중앙회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납기일 이후에는 중앙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미납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납입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순서는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자동납부이체시일은 중앙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, 중앙회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개시일로 합니다.
- 자동납부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중앙회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,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중앙회가 협조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.
-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기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합니다.

본인은 대출 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2호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) 및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 약정서의 각 조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을 확약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서명 (인)

| 구비서류 |  |
|------|--|
| 일반대출 |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, 신분증 사본<br>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), 계약자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사본·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|
| 의료대출 |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, 신분증 사본<br>② 입원확인서 원본(연속 3일 이상 입원기간 명시, 퇴원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)<br>(입원확인서에 진단내용 포함시 진단서 생략 가능)<br>③ 진단서 원본(진단서에 입원기간 포함시 입원확인서 생략 가능)<br>※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 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(출산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)<br>(예시.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, 입(퇴)원확인서, 출생증명서, 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)<br>※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<br>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), 계약자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사본·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|
| 재해대출 |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, 신분증 사본<br>② 재해확인서 원본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원본(확인서 유효기간 내 신청)<br>※ 재해확인서는 "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"(중기부 고시)에 의거, 발급받은 「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」 만 인정<br>※ 피해사실확인서는 "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"에 의해 발급받은 「피해사실확인서」 만 인정<br>※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<br>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), 계약자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사본·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|
| 회생대출 |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, 신분증 사본<br>②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시. 회생개시결정문, 회생인가결정문 등, 회생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<br>※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<br>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), 계약자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사본·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|
| 파산대출 |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, 신분증 사본<br>②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시. 파산선고결정문 등, 파산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<br>※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<br>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), 계약자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사본·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|

(2022. 5. 16. 개정시행) (2023. 9. 26 개정, 2023. 10. 16. 시행) (2024. 5. 9. 개정, 2024. 6. 1. 시행) (2024. 10. 1. 개정시행),  
(2025. 7. . 개정, 2025. 8. 1. 시행)